

국책과제,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경쟁자 선정 후 탈락자의 선정취소 주장 행정소송 - 경

원자 소송: 대전지방법원 2023. 11. 29.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



(1) 경쟁자의 행정소송, 경원자 소송의 원고 적격: 인가·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

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,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

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
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
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
두27517 판결 등 참조). 다만,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
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
당한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, 대법원 2013. 7. 11.
선고 2013두147 판결 등 참조).

- (2)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자신들의 신청과제가 이 사
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, 이 사건 처
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탈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, 이 사건 처분에 대
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로서
의 지위를 잃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다시 진
행할 경우 원고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될 가능
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, 달리 원고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
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절차에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
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. 따라서 원고에게
경원자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있다.

(3) 선정취소 주장요지: 이 사건 평가단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공시된 RFP에서 인체세포 관련 식약처 허가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, GMP 시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,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.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참가인에 보건복지부 또는 진흥원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교수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면, 이 사건 평가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(4)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.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6. 15. 선고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).

(5)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피고가 지원기관들이 제안한 연구과제의 필요성, 목표, 추진 전략·방법 및 체계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

한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어떤 신청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주체인 전문기관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과제심사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인 점,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고도의 의료·약학상의 기술적·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제심사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,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.

첨부: 대전지방법원 2023. 11. 29.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